

(報告)

성남시의회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105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1년 5월 23일

발의자 : 장윤영의원외10인

1. 제안이유

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질적 발전을 도모하여
주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합리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지역발전에
기여 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가. 직 무 (안 제2조)

- 1) 의회의 권한에 관한 정책적 자문
- 2) 의회제도에 관한 사항
- 3) 의회의 권한 중 의회위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
- 4) 기타 의회위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

나. 구성 및 위촉(안 제3조, 제4조)

- 1) 자문교수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로 한다
단 특별위원회 구성 시에는 별도 위촉
- 2) 자문교수단은 전공분야 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
의장이 위촉
- 3) 자문교수단 위원의 자격은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전·현직

대학교수로서 성남시 관내 학교에 재직 또는 주소를 둔 자

다. 임 기 (안 제6조) :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

라. 회 의 (안 제8조) :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

성남시의회조례 제 호

성남시의회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(이하“의회”이라 한다)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남시의회 자문교수단(이하“자문교수단”이라 한다)를 설치하고, 자문교수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직무) 자문교수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의회의 권한에 관한 정책적 자문
2. 의회제도에 관한 사항
3. 의회의 권한 중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
4. 기타 의회 의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

제3조 (구성) ①자문교수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 단 특별위원회 구성시에는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.

②자문교수 단장은 의회 의장이 된다.

③자문교수단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두되 간사는 선임전문위원이 서기는 의정담당이 된다.

제4조 (위촉) ①자문교수단은 전공분야 별로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.

②자문교수단의 자격요건은 석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전·현직 대학교수로서 성남시 관내 학교에 재직 또는 성남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.

제5조 (해촉) 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.

1.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
2. 제2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
3. 기타 자문교수단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

제6조 (임기) 자문교수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 (단장) 단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자문교수단을 대표한다.

제8조 (회의) 자문교수단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.

제9조 (자문) 자문교수단에 자문을 요구할 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1. 문서로 요구하여 문서로 답변을 받되 설명이나 문답을 요할 시는 회의를 소집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2. 자문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시에는 구두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3. 기타 필요시는 간담회등에 초청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제10조 (실비보상) 자문교수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